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414,418,472	42,432,554
일반회계	1,327,383,413	39,821,502
특별회계	87,035,059	2,611,052
기타특별회계	87,035,059	2,611,05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65,851	10,976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8,190,644	1,145,71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23,595,183	707,855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1,494,895	644,847
주차장 특별회계	1,973,709	59,211
수질개선 특별회계	55,105	1,653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2,070	62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890,976	26,729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66,626	13,99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781,549천원(일반 4,000,000, 재해·재난 42,781,549)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3,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